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제출서류 중 1)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서(요약서 포함)”를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의2, 별지 제11호의4,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제출 서류	제출 시기
1. 공통제출 서류	가.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외국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투자형태 관련 제출서류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면서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함)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 까지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외국투자자 또는 그 외국투자자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라.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 까지
	마.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1부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외국인투자 신고시

		고서 1부 3)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바.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까지
	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까지
3. 출자목적물 관련 제출서류	가.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 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서
	나. 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서
	다.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서
	라.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영 제2조제11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	외국인투자 신고서

		(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	
	마. 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출자·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바.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2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4. 국가안보 위해 여부 판단 관련 제출서류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가.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신고 시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부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생산 내역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생산 내역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 목록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내역	

비고

1. 위 각 목의 증빙서류는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허가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회 사 명						
우 - / 주소 / 전화() - / 전송() -						
투자에정지 주소						
투자 목적						
투자 사업 또는 생산 품목		총 투자금액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정액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용도별 투입 상세 (단위: 원)						
용도 분류	연 도					총계
토지 구입비						
또는 토지 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자본재 구입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타()						
총계						

Overview of Investment Plan through Use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Business name or trade name	
--------------------------------	--

Postal code - /Address / Phone no.() - / Fax no.() -

Address of investment location	
-----------------------------------	--

Purpose of investment	
-----------------------	--

Target business or production item		Total amount of investment	KRW
		Amount of unappropri- ated retained earnin gs to be invested	KRW

Details on the use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unit: KRW)

Classification	Year					Total
Cost of land purchase or rent						
Cost of construction						
Cost of infrastructure installment						
Cost of capital goods purchase						
Cost of research equipment purchase						
Miscellaneous ()						
Total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	-----	-----	------	-------------------

외국 투자자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 외국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대상 국내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⑥ 주소 (현주소 또는 예정지 주소)	본사	(전화번호:)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⑧ 자본금 (출연금)	기존 주 취득 시	원	
	그 외	원	
	⑨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	⑩ 투자대상 국내기 업의 영 제5조제 1항제2호나목 해당 여부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 산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을 보유한 기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	

※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신고 (신청) 내용	⑪ 투자형태	[]법인([]신주, []기존 주) []개인사업 []비영리법인 출연	⑫ 투자목적	[]공장 설립·증설 []사업장 설립·증설 []해당 기업(4번 기업) 인수합병 []제3기업 인수합병
	⑬ 주식등 양도자	상호 또는 성명(국문 또는 영문)(기존 주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화번호:)		
	⑭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현금, []자본재, []주식, []부동산, []채권, []산업 재산권 등	현금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기타	원(USD 상당)
	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총액: 원(USD 상당)		
	⑯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⑰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자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 액면총액: 원	
⑱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신규 근로자 수	명			
⑲ 취득방법(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으로 주식등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배당, []매입·상속·유증·증여,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기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인 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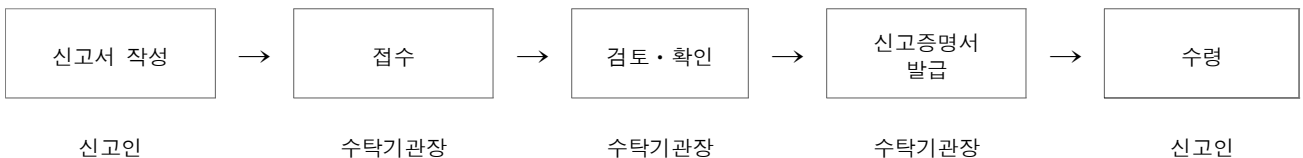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법에 따라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영 제2조제11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 중 국내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주식이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11. 출자·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2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외국투자자) 현황 1) 의사결정권한이 규정된 내부규정(정관 등), 지배구조[주주구성(성명, 국적 포함), 지분율, 계열회사 현황 등] 2)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 3) 사업보고서(사업내용, 생산제품 및 기술보유, 연구인력, 제품·기술의 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등) 4) 외국정부의 보유지분(국부펀드·공공기관 등 포함), 외국정부가 보유한 직간접적인 권리 내용 나. 투자대상기업(국내기업) 현황 1) 의사결정권한이 규정된 내부규정(정관 등), 지배구조[주주구성(성명, 국적 포함), 지분율, 계열회사 현황 등] 2)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 3) 사업보고서(사업내용, 관련 시장 규모와 경쟁력, 생산제품 및 기술·공정 개요) 4)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생산 내역,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생산 내역,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 목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내역	수수료 없음
------	--	-----------

	다. 투자내용 1)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금번 외국인투자자로 변경되는 사항(지배구조,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내용), 외국인투자의 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 2) 투자계획에 따른 기술·물품·용역 등 제공조건 및 방법, 기술·사이버 보안대책 마련 여부 등 라. 그 밖에 수탁기관장이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이 신고증명서(허가증명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은 신고 또는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 미제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 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작성방법

①~③란에서 '외국투자자'란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게 될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상호 또는 성명, 국적, 주소를 기입하되, 상호 또는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의 경우 '국적'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④·⑤란은 외국투자자가 출자(또는 출연)하려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취득하려는 주식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설립 중인 법인은 미정 표기)는 본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⑥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주공장(또는 주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를 적습니다. '금번 투자지역'은 신주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며 특정 투자지역의 "도로명" 또는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적되, 특정 투자지역이 없는 경우 본사의 주소를 적습니다.

⑦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또는 주식등 발행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⑧란의 '자본금(또는 출연금)'은 신주등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 외국인투자 전과 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주식등의 액면총액(또는 출연금 총액)을 원화로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일 주식등 발행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주식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적고 전자는 부기합니다.

⑨·⑩란은 ⑪란의 '투자형태'가 '법인(기존 주)'인 경우에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표시합니다.

⑨란의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표시를 합니다.

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따라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소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다.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따른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해당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마. 해당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

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 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⑩란의 '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영 제5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는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등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을 보유한 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합니다.

⑪란은 주된 '투자형태'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 법인(신주):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법인(기존주):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이 이미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개인기업: 외국투자자가 개인사업체에 신규 또는 추가 투자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출연: 외국투자자가 내국비영리법인의 출연에 신규 또는 추가 참여하는 경우

⑫란은 주된 '투자목적'을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 공장 설립·증설: 제조업(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업장 설립·증설: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인수합병: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해당 기업(④번 기업)의 지분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 제3기업 인수합병: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지분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⑬란의 '주식등의 양도자'(개인 또는 법인)는 외국투자자가 기존 주식등의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을 국문(또는 영문)으로 적고 양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양도 규모 순으로 대표적인 양도자 및 전체 양도자 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습니다. (예시: 홍길동 외 2명)

작성방법

⑭란은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의 형태를 구분하여,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별로 그 취득가액을 적고, 주식·부동산·채권·산업재산권 등은 해당 란에 [v]표시하고, 기타 항목에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출자목적물 중에서 채권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⑮란은 금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취득총액'을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으로 기재하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의사항: 주식 등을 양수하는 자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⑮란의 '취득총액'은 ⑮란의 외국인이 양도할 주식(지분)의 내용(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⑮란의 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취득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⑯란은 ⑮란의 취득총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⑯란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할 주식등의 내용(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적되, '취득총액'은 ⑮란의 취득총액과 일치해야 하며, 취득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하여 적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란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④란의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주식등 발행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내용을 적되, '취득총액'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취득총액과 ⑮란의 취득총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액면총액'(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액면총액과 ⑮란의 액면총액의 합계를 적고,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또는 전체 출연금)에 대한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또는 외국투자가의 출연비율)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란은 이번 투자에 따라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⑲란은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사유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참고) 필요시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Foreign Investment by Acquisition of Stocks (or Contribution) [] Notification Form []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 Please fill out this entire form except for the shaded boxes and mark √ in [] where applicable. (Page 1)

Receipt no.	Date of Receipt	Date of Completion	Term of Completion	Notification: Immediate Authorization: 15 days
-------------	-----------------	--------------------	--------------------	--

Foreign Investor	① Name or Trade Name(English) Individual ☐ Foreign company ☐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ve organization ☐	② Nationality
	③ Address (Phone no.:)	

Foreign-invested enterprise (domestic company receiving investment)	④ Name or trade name	(Korean)	⑤ Business Registration No. (Headquarters)
		(English)	
	⑥ Address (Current or future)	Headquarters	(Phone Number:)
		Main factory(Main place of business)	(Phone Number:)
		Investment location(for acquisition of newly issued stocks & contribution)	(Phone Number:)

⑦ Intended Business/Present business

※ Sub-Class of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Foreign-invested enterprise (domestic company receiving investment)	⑧ Capital (Contribution)	Where acquiring outstanding stocks won		
		Others	Before acquisition (contribution): won	After acquisition (contribution): won
	⑨Acquisition of managerial control []	⑩ Whether domestic company to be invested in has possibility of falling under Article 5 (1) 2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Company producing defense materials defined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3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
			Company producing goods, etc. or technologies subject to permission or approval for exportation under Article 19 of the Foreign Trade Act are likely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
			Company possessing contract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under Article 4 (1) 2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
			Company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y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 If ⑨ ⑩ are both marked with [v], documents required to determin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should be submitted.

Details of notification (application)	⑪ Type of investment	☐ Corporation(☐ newly issued, ☐ outstanding) ☐ Establishing Private Enterprise ☐ Contribution to Non-Profit Corporation	⑫ Purpose of Investment	☐ Establishment/expansion of factory ☐ Establishment/expansion of place of business ☐ Merger or Acquisition of foreign-invested company ☐ Merger or Acquisition of other company
	⑬ Seller of stocks or equivalents	Trade name or name (Korean or English) (Only when acquiring current outstanding stocks) (Phone no.:)		
	⑭ Object of investment (contribution)	☐ Cash, ☐ Capital Goods, ☐ Stock, ☐ Real Estate, ☐ Bond, ☐ Industrial Property Rights	Cash Amount	won (USD)
			Capital Goods	won (USD)
Other			won (USD)	

⑮ Foreign investment amount		Total acquisition: won (USD)	
⑯ Shares (stakes) (to be) acquired	Type	Par Value per Stock (Share) (B)	Acquisition Value per Stock (Share) (B)
	Quantity (A)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A×B)	Total Acquisition Price(A×C)
⑰ Total Amount and Percentage of the Investor After Acquisition		Acquisition Price : won (USD)	%
		Par Value of All Stocks: won	
⑱ Number of Jobs to be Created		Persons	
⑲ Basis of acquisition (Only when acquiring stocks or equivalents pursuant to Articles 5 (2) 2 through 6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Convertible Bonds, ☐ Preemptive Rights, ☐ Bond Issue, ☐ Dividend, ☐ Purchase/Inheritance /Bequest/Gift, ☐ Merger/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stocks/Division, ☐ Other()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5 (1) and (2)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Article 2 (1) 1 (a)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Year Month Day
(Signature or Seal)

Applicant or Reporting Person
(or Power of Attorney) (Phone Number:)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head of delegated authority)

For the Applicant (Reporting Person)

Notification (Authorization) No:

☐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 The above is authorized. (Condition:)

Year Month Da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Delegated Authority)

S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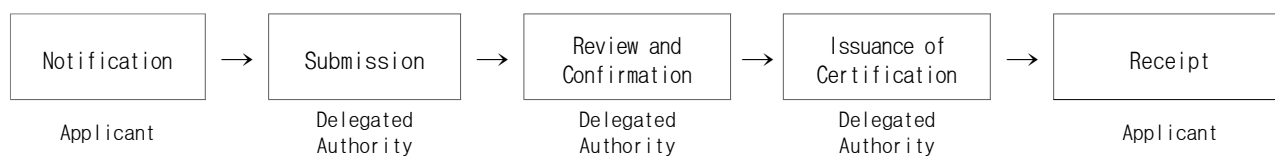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Required Documents	3) Business report (Description of business activities, manufacturing production, technologies, research personnel, including details and state of production and technologies, production processes, etc.) 4) Stakes owned by foreign governments (including sovereign funds or state-owned enterprises), details of direct or indirect rights possessed by foreign governments b. Information regarding the foreign-invested company(domestic company) 1) Internal regul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including the rights to control, determine, direct, or decide important matters affecting the applicant, ownership and control details of the applicant(including holding entities), such as identities and country of origin as well as percentage of investors or shareholders with structure diagrams 2)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if unavailable, the latest financial records or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applicant 3) Business report (Overview Description of business activities, size of the relevant market and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manufacturing production, technologies, research personnel, including brief description on the state of production and technologies, production process, etc.) 4) Documents to prove the production of defense materials pursuant to subparagraph 7 of Articl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production of goods subject to approval under Article 19 of the Foreign Trade Act, existence of contracts that are nationally confidential pursuant to Article 4 (1) 2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Act, possess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y pursuant to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 Investment details 1) Agreement or Plan of Merger or Acquisition, details of post-implementation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governance structure, scope and details of rights acquired by foreign investor), description of the source of fund(including debt) and its supporting documents 2) Conditions and means of transferring technologies, goods, services, etc. pursuant to the Agreement or Plan, description of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and cybersecurity measures d. Other documents deemed necessary by the entrusted or designated agency receiving report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Processing Fee Exempt
---------------------------	--	-------------------------------------

Notice

This notification (or authoriz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foreign investment funds. When any authorization, approval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another law, the applicant must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under that law. Regarding notifications or applications, applicants may be disadvantag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f they fail to submit required documents, submit false documents or omission/errors are found in the submitted documents.

Procedure



Instructions

- ①~③ A 'Foreign Investor' is a foreign citizen (individual or corporation) who intends to acquire stocks, etc.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lease write the foreign investor's name and address in English. If there are multiple foreign investors, please fill out the details of all investor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ve organizations under Article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eave 'Nationality' blank.
- ④ • 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mpany in which the foreign investor intends to invest (or contribute) (including the company currently being established) or the name of the domestic company whose stocks, etc., will be purchased. In addition, provide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company's headquarters (if the company is currently being established, just write N.A.).
- ⑥ Please specify the address of both the headquarters and the main factory (or main place of business). If the company is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the applicant must provide the address of the main factory. If the company is in a business other than manufacturing, please specify the main place of business (or research center). In addition, specify the address of the location of investment if the investor acquires newly issued stocks or shares. Please specify the "Road Name" or "Name of Town(Eup, Myun, Dong)" of the specific location of investment. (If there is no specific location of investment, just write the address of the headquarters.)
- ⑦ Please specify the intended business of the foreign-invested company (or the current business of the company issuing the stocks, etc.). If there are multiple businesses, please list the main businesses up to a maximum of four.
- ⑧ Please write in Korean won the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 etc. in the foreign-invested company (or the total amount he or she has contributed), both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won up to the last digit. If the paid-in capital of the company issuing stocks does not match the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 (number of shares x par value per share (stock)), write down the latter and additionally record the former.
- ⑨ • ⑩ Please mark only when the selected item for ⑪(type of investment) is 'Establishing corporation (outstanding)'
- ⑨ 'Acquisition of Managerial Control' refers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listed below. Where it satisfies any of the followings, please mark [v].
1. Where a foreigner intends to acquire a company (including in cases where he/she intends to establish a new corporation by separating a specific part of business of a company;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hrough the trade of stocks, etc., an exchange or merger between companies, exercise of security rights, receipt of payment in kind, or any other method and he/she intends to own solely or jointly at least 50/100 of the stocks, etc. of the company with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including in cases where a foreigner becomes the largest holder of stocks, etc. with less than 50/100 thereof and is able to exercise dominance over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management of the company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related party):
 - (a) The spouse and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including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f the spouse) of the relevant foreigner;
 - (b) A foreign corporation, at least 50/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or the total amount invested which is owned by the relevant foreigner jointly with the persons in a relationship prescribed in items (a) or (c) or under their de facto dominance;
 - (c) The relevant foreigner and an employee of a person prescribed in item (b) or (d)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is refers to an executive, a commercial employee or an employee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his refers to a person who earns a living through the money or property of an individual);
 - (d) A foreign corporation which owns at least 50/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or the total invested amount jointly with the corporation prescribed in item (b), the relevant foreigner and persons prescribed in items (a) and (c);
 - (e) A foreigner who has agreed, by means of an agreement, contract, etc., to acquire or dispose of stocks, etc. or exercise voting rights (including the authority to direct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jointly with the relevant foreigner;
 2. Where a foreigner intends to take over or lease all or a major part of the business of a company or operate de facto the relevant company by being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whether solely or jointly with a related party.
- In ⑩ 'Whether domestic company to be invested in falls under Article 5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mark [v] where the company: produces defense materials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produces strategic items pursuant to the Foreign Trade Act, possesses confidential national contract pursuan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Act, possesses national core technology pursuant to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⑪ Select one item for main 'type of investment'
- Establishing corporation (newly issued): A foreign investor participates in the establishment or capital incre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 Establishing corporation (outstanding): A foreign investor acquires outstanding stocks or shares of a domestic corporation
 - Establishing private enterprise: A foreign investor invests in an unincorporated private enterprise
 - Contribution to non-profit corporation: A foreign investor participates in a contribution to a non-profit corporation.

Instructions

⑫ Select one item for main 'investment purpose'

- Establishment/expansion of a factory: A foreign-invested company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or a company that operates both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businesses) will use foreign investment funds for the capital investment or operation of a business.
- Establishment/expansion of a place of business: A foreign-invested company in a non-manufacturing business will use foreign investment funds to operate or expand its non-manufacturing business.
- Merger or Acquisition of a foreign-invested company: Intending to acquire the stakes or equivalents of an investment recipient company (the company the foreign investor intends to invest in (or contribute to) stipulated in ④) with foreign investment funds to secure managerial rights
- Merger or Acquisition of another company: Intending to acquire the stakes or equivalents of a company other than one that is a recipient of investment with foreign investment funds to secure managerial rights

In ⑬ Seller of Stocks, etc. (individual or corporation), fill in only when the foreign investor makes a foreign investment through the acquisition of existing stocks, etc. State the trade name or name in Korean (or English), and if there are two or more sellers, state the primary seller in terms of size of sale and the total number of sellers (e.g. Hong Kil-dong and 2 additional persons).

In ⑭, write down the acquisition price of each object of investment (or contribution) classified by type of object of investment (or contribution). In the case of stocks, real estate, industrial property rights, etc., check [v] where relevant and write down the acquisition amount in 'Other'.

※ Note: Among the objects of investment, bonds only refer to investment in the types of borrowings pursuant to Article 2 (1) 8 (f)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bond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redemption of overseas borrowings.

In ⑮, write down the total value of the investment (or contribution) by the foreign investor in Korean won and the equivalent amount in USD (for USD, the currency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vestment notification shall apply). If there are two or more foreign investors, write down the amount for each investor.

※ Note: When an acquirer of stocks or shares is a foreigner (individual or corporation), write down the total value of the shares or equivalents ⑬ in total acquisition price(same as the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form 'Certific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n the total acquisition price ⑮. In this case, the total acquisition price may not be consistent with the acquisition price according to stock transfer contract as specified in ⑰. In ⑱, write down total acquisition price in ⑮.

In ⑯, provide all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stocks or shares that will be acquired by the foreign investor specified in ① (except when investing in non-profit corporations). The total acquisition price must be consistent with the acquisition price specified in ⑮. Foreign currency must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If there are multiple foreign investors, specify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each investor.

In ⑰, write down the amount and percentag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of the foreign investor ① in the foreign-invested company (or issuer or stocks, etc.) ④. In 'Total Acquisition Price', write down the sum of the existing acquisition amount invested by the foreign investor in ① and the par value of all stocks in ⑰. Please express as a percentage the total value of all stocks, etc. owned by the foreign investor in ① (or the percentage of the foreign investor's contribution) relative to the total value of all stocks, etc. of the company (or total contributions). If there are multiple foreign investors, specify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each investor.

⑲ Please specify the number of full-time jobs expected to be created by the investment.

In ⑲, write down the reason for the acquisition of stocks, etc. where Articles 5 (2) 2 through 6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y.

※ Note: Attach separate pieces of paper if necessary.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 등 발행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② 사업자등록번호(본사)
	③ 주소	본사 금번 투자지역	(전화번호:)
	④ 자본금	원	
	신고 내용	⑤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인정액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인정액 (A x B)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예정액 (A)	재무제표상 금액 (A')
원 (USD 상당)		원	원
⑥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 접수기관 기재란)			
⑦ 사용용도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		
변경신고의 경우 변 경내용	변경사항	⑧ 이미 신고된 내용	⑨ 변경후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신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1부	수수료
	2. 변경신고: 변경내역서(증명서류 포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1부	없음

유의사항

이 신고내용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의 투자 확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실제 투자금 사용명세(증명서류 및 영수증 등 포함)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작성방법

< 신규 신고인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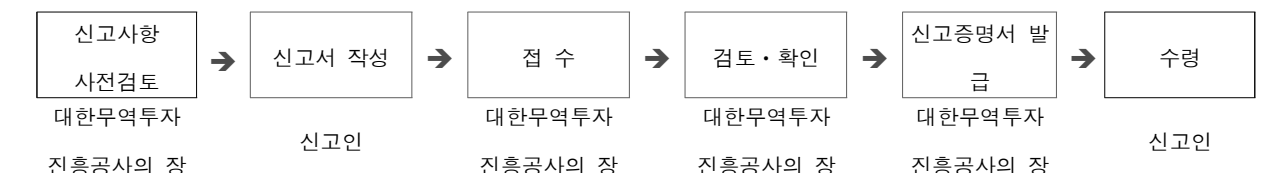
- ①~②란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또는 취득한 주식 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③란의 '주식' 중 '본사'는 본사의 주소를 적습니다. '금번 투자지역'은 특정 투자지역의 "도로명" 또는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기재하되, 특정 투자지역이 없는 경우 본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④란의 '자본금'은 주식 등 발행기업의 납입자본금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일 주식 등 발행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주식 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하고 전자는 괄호안에 부기합니다.
- ⑤란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인정액'은 금번 투자 예정 금액인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투자예정액(A)'에 '외국인투자 비율(B)'을 곱한 금액이며,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으로 기재합니다. '재무제표상 금액(A')'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기재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등록증에 표시된 비율로써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표시하며, 두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 ⑥란은 금번 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또는 주식 등 발행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 ⑦란은 주된 '사용용도'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등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등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인 경우 >

- ⑧~⑨란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기존신고 ①~⑦란에 작성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미 신고된 내용'은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후 내용'은 변경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단, ⑤란의 변경신고 중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무제표상금액(A')은 이익잉여금의 처분(배당처분, 준비금적립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인정액 변경금액{ $\text{Min}(A, A') * B$ }을 작성합니다.

※ (참고) 필요시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Foreign Investment through Use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 [] Notification [] Change of Information

※ Do not fill in the shaded boxes, and mark √ in [] where applicable.

(Page 1)

Receipt no.	Date of receipt	Processed date	Processing period
Foreign-invested company (company issuing stocks, etc.)	① Business name or trade name	(Korean) (English)	②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headquarters)
	③ Address	Headquarters (Phone no.:) Location of investment	
	④ Capital	won	
	⑤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Notification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A x B)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Amount to be invested (A)	Foreign investment ratio (B)
	(USD won)	won	won %
	⑥ Business of intent (present business)		
	※ Sub-class of KSIC (to be filled in by receiver of notification)		
Change of information	⑦ Purpose of use	[]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factory or research facility []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business place or research facility	
	Details of change	⑧ Before change	⑨ After change

The above notifica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Article 2, Paragraph 1, Item 1, (c) and Article 2, Paragraph 1, Item 2, (c)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Date: (YYMMDD)

Notified by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Tel no.:)

To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To the notifying person
Notification no.: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Date: (YYMMDD)

The President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 80g/㎡)

Required documents	1. Notification: overview of investment plan through use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 audit report on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for the most recent settlement period, copy of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2. Notification of change: specification of change (including documents of proof), audit report on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for the most recent settlement period, copy of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Fee None
--------------------	--	-------------

Note

Execution of investment of foreign investment funds according to this notification form shall be verified by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by reviewing the actual expenditure of investment funds (including documents of proof, receipts, etc.)

Instructions

< Initial notification >

In ① and ②, fill in the business name or trade name of the company in which the foreign investor invested or the domestic company that issued the stocks acquired by the foreign investor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headquarters.

In 'Address' under 'Headquarters' in ③, enter the address of the headquarters. In 'Location of investment', enter the address of the specific location and include the street name or "eup, myeon, dong". If there is no specific investment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headquarters.

In ④ 'Capital', enter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of the company issuing stocks, etc. down to the last digit. If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of the company issuing stocks, etc. does not match the total face value (no. of stocks x face value per stock/share) of the stocks, etc., enter the latter and write down the former in parentheses.

⑤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is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Amount to be invested' under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A)' and the 'Foreign investment ratio' (B). Enter the amount in won and the amount equivalent in USD (apply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notification of investment). In 'Amount on financial statement (A)', enter th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stated in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Foreign investment ratio', enter the ratio stated in the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up to the first decimal place and discard the digits to its right.

In ⑥, write down the business that the foreign-invested company intends to operate with the investment for which this notification is filed (or the business currently operated by the company issuing stocks, etc.). If the company intends to operate multiple businesses, write down up to four businesses of intent, starting from the most important business.

In ⑦, choose just one purpose of use.

-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factory or research facility: Where a company operating a manufacturing business intends to use the foreign investment funds to purchase, rent or construct land or buildings needed for the installation of a factory or research facility or to install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thereof, or to purchase the capital goods and research equipment necessary to operate such business.
-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a business place or research facility: Where a company operating a non-manufacturing business intends to use the foreign investment funds to purchase, rent or construct land or buildings needed for the installation of a business place or research facility or to install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thereof, or to purchase the capital goods and research equipment necessary to operate such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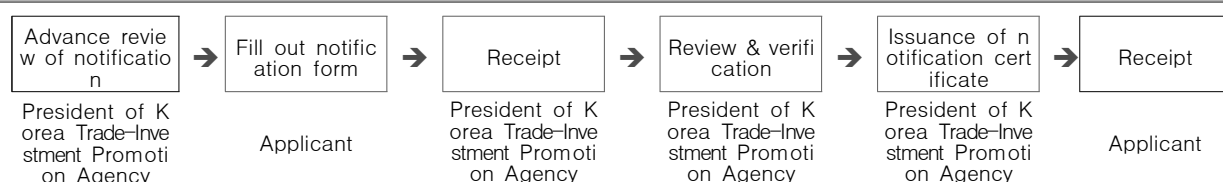
< Notification of change >

Fill in ⑧ and ⑨ only if you are filing notification of change. Fill in the changes in the relevant box from ① to ⑦. Enter the previously notified information in "Before change", and the changed information in "After change".

In "Amount on financial statement (A)" under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 under ⑤, fill in the changes only if retained earnings are appropriated (into dividend, reserves, etc.) and enter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ppropriated amount. Then calculate and enter the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recognized as investment $\{(Lesser\ of\ A\ and\ A') \times B\}$ after change.

※ Note: Use an extra piece of paper if necessary.

Procedure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총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쪽 참조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신청 허가 등	의제 대상 허가 등	신청 사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라.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라.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 []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가.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공장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 「수도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 [] [] []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 [] []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공장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 []

6.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
	나.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마.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바.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
	사.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 인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아.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차.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카.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허가	[]
	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가.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	[]
	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마.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해제 등	[]
	나.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마.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바.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사.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차.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	[]
	나.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
	다.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마.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
	다.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의 신고	[]
	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처리기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허가등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위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직인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상호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된 내용	외국인투자 신고일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세관수입신고 수리일					
수입신고번호					
현물출자의 내용	품명	수량	규격	제작자	금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관세청장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세청장

직인

관세청장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세청장이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Completion of In-Kind Investment

※ Do not fill in the colored box, and mark √ in the applicable item in [].

Number of Receipt	Date of Reception	Date of Completion	Term of Completion	Immediate
-------------------	-------------------	--------------------	--------------------	-----------

Name of foreign investor	Nationality
--------------------------	-------------

Foreign investor company	Name
	Address (Phone no.:)
	Business registration no.

Content of report	Date of FDI report	Year	Month	Date
	FDI amount and ratio(%)	Won(approximately	USD),	%

Date of the customs office's receipt of import declaration	
Import declaration number	

Content of in-kind investment	Description	Quantity	Dimension	Manufacturer	Amount

I, the undersigned, hereby apply for the confirmation of the completion of in-kind investment under Article 30, Paragraph 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Year Month Dat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the proxy) (Phone no.:)

For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ustoms Service

For the applicant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Year Month Dat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ustoms Service



Matters to be confirm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ustoms Servic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Processing fee
		None

Consent to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 agree [] do not agree that,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ing of this matter,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ustoms Service checks "matters related to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by means of the system for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Should the applicant not agree, he/she should submit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Resident registration no. of the applicant~~
~~(or foreigner registration no.):~~

Applicant

(Signature or seal)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1.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나. (생략)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1. ----- ----- ----- ----- ----- ----- -----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경우: <u>별지 제2호의2서식</u> 2. (생 략) ② · ③ (생 략)	--- <u>별지 제2호의2서식,</u> <u>별지 제2호의3서식</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